

원주생활관(학생기숙사) 사칙

제정일 : 1985.03.01

개정일 : 2017.12.20

담당부서 : 원주생활관 행정팀(033-760-5303)

제1조(목적) 이 사칙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원주생활관 운영규정 제1장 3조에 의거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입사) ① 원주생활관 운영규정 제4장 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전 학년도 학기 말에 신청하며, 운영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입사를 생활관장이 허락한다.

② 입사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사할 수 없다.

③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기간 내에 생활관 입사비와 비품관리보증금을 납입한 후 입사할 수 있으며, 입사비는 학기 단위로 납부한다. 단, 비품관리보증금은 1년 단위로 하며, 생활관을 퇴사하는 경우 환불한다.

제3조(방배정) 생활관의 방배정은 전산처리하고,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입사비 납부 후 지정된 날짜에 방친구(roommate)를 선택할 수 있다. 단, 신입생은 1학기에는 방친구를 지정 할 수 없으며, 2학기에는 1학년 동일 학번호는 방친구 지정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출입) ① 사생은 카드를 항상 휴대하고 현관 출입시 인식기(reader)에 입력 후 출입한다.

② 카드키 또는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기능 불능 상태인 경우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 단 재발급 비용은 사생이 부담한다.

③ 카드키 또는 열쇠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 해주는 것은 금하며 근무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남·여 사생간의 출입은 절대 금하며,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학사간의 출입은 금한다.

제5조(외부인 출입) ① 사생은 사무실 혹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 등,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,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.

②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는 해당 방친구의 허락 하에 사무실(또는 사감)의 허가를 득한 후 안내실의 안내 절차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.

제6조(일과표) 사생은 다음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개문 : 05:00, 폐문 : 24:00(금~일요일 00:30)

② 점호 : 당일 23:00 ~ 익일 01:00

제7조(금주, 금연) 생활관 건물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금한다.

제8조(면회) <삭제>

제9조(타실방문 시간제한) 학사 내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4:00 이후에는 다른 학생 방의 출입을 금한다.

제10조(외출 및 외박) ① 외박시에는 정해진 시간(05:00~22:30)에 외박부를 학사 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외박 일수가 잦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.

② 전산 입력하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된다.

제11조(사생대표) ① 구성 : 총사생 대표는 1명, 그 외 부사생대표 및 집행부 구성은 총사생 대표에게 위임한다.

② 임기 : 대표의 임기는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년으로 한다.

③ 선출 : 대표는 전년도 11월중에 사생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, 생활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④ 자격 : 선출된 사생대표 및 집행부 임원 중 해당연도 제1학기 입사 허가자여야 하며, 벌점 과다자는 사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.

제12조(사생회) 사생회의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사생회 회칙을 둔다.

제13조(사내모임) ① 정기모임 : 매 학기 2회(입·퇴사예배)

② 임시모임 :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생대표 회의의 의견을 모아 모임 3일전까지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광고물 게시와 택배) ① 게시물 또는 광고물은 사전에 생활관의 허가를 받고 검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택배는 사생 개인과 택배회사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안내실이나 생활관 사무실에서는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.

제15조(점호 및 점검) 사감, 사감조교는 점호 및 생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사생은 점호와 생활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.

제16조(상벌) 생활관에는 별도의 상·벌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.

① (상점)

1. 벌점이 없는 학생 중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상점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입사생 선발 시 우선입사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다.
2.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. 단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이 취득한 상점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.

② (벌점)

1. (퇴사명령) 사감은 총벌점 10점 이상인 학생을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생활관장은 심의를 거쳐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, 보호자와 학과장에게 통보한다.
2. (벌점 과다자) 벌점 과다자는 다음 학기 기숙사 입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만큼의 상점을 받아야 입사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(강제퇴사) 학교의 명예훼손, 성범죄 등 중대 사안에 연루된 경우 강제퇴사 할 수 있다.

제17조(변상)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8조(퇴사 및 입사비 환급) ①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퇴사절차(지급물품반납)에 따른다.

② 자진 퇴사 시 납부금의 반환은 공식 입사 시작일 1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하며, 이후 환불은 공식 입사일 부터 13주차까지 중도 퇴사 시 입사비 총액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한다. 단, 군입대 또는 질병휴학(의사진단서 첨부)으로 인하여 휴학 할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학기말 퇴사 시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 후 손실 비용(카드키, 열쇠, 열쇠고리,건조대 등)을 청구한다. 단, 손실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명서 발급제재 등을 할 수 있다.

④ 강제퇴사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입사 할 수 없으며, 환불은 공식 입사일로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입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70%를 환불한다. 단, 13주차 이후 강제퇴사 시 환불금액은 없다.

제19조(적용) 본 사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- (1) 이 사칙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이 개정 사칙(제6조, 제11조)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- (3) 이 개정 사칙(제10조, 제11조, 제18조)은 199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4) 이 개정 사칙(제1조, 제2조, 제6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7조, 별첨기준표 ①항, ②항, ③항, ④항, ⑤항, ⑥항)은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(5) 이 개정사칙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6) 이 개정사칙은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7) 이 개정사칙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8) 이 개정사칙은 199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9) 이 개정사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(10) 이 개정 사칙(제10조 ②항, 제13조, 제14조 ①항, 제15조 ②항 제1호, 제17조 ④항, 별첨기준표 ⑨항, ⑩ 항)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11)이 개정 사칙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(12) 개정 사칙(제2조, 제4조, 제7조, 제10조, 제15조, 제16조)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(13) 이 개정 사칙(제15조 제1항)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(14) 이 개정 사칙(제16조 제1항 제1호)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(15) 이 개정 사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16) 이 개정 사칙(제16조, 제18조)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(17) 이 개정 사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- (18) 이 개정 사칙(제6조)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19) 이 개정 사칙(제18조)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(20) 이 개정 사칙의 제18조 제2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고, 제18조 제3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상점 기준표

상점코드	상점내용	상점	비고	
11	11-1	입·퇴사예배 참여	1	
	11-2	특강 및 간담회 참여	1	
	11-3	소모임 활동 등 참여(3회 이상 참석)	1	
	11-4	봉사 활동 (4시간)	2	외부 지정기관
	11-5	공동생활에 기여한 경우	1	

※ 봉사활동의 상점은 별점만회 용도로만 적용함

별점 기준표

별점코드	별점내용	별점	비고
1	※ 사내 시설물		
1-1	사전 허락 없는 공고물 게시 또는 배포	1	
1-2	열쇠 복사	3	
1-3	① 시설물의 무단 장소 이동 및 무단이용(24시 이후)	1	
	② 기물(시설물) 파손(고의)	5	
1-4	사내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	1	
1-5	학기 중 또는 퇴사 시 방을 불결하게 사용(화장실 청소 불량, 실내 쓰레기 방치 등)	1	
2	※ 소란행위		
2-1	폭행, 난동행위	5	
2-2	음주로 인한 사내에서 소란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(주정, 인사불성, 구토 등)	5	
2-3	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(금연구역 내 흡연)	5(3)	
2-4	사내에 주류만입 및 사내음주	5	
2-5	고성방가, 집단 방담, 악기연주, 이웃에 들리는 카세트, 컴퓨터 소리 등	1	
3	※ 사내절도, 카드(화투)놀이		
3-1	사내 절도행위	10	
3-2	사내 카드(화투)놀이	2	
4	※ 출입		
4-1	외부인 무단입사		
	① 출입구에서 적발	3	
	② 무단입사 후 퇴사 시 적발	5	
	③ 숙박	10	
4-2	출입증 대여행위	5	
4-3	남·여 간의 방을 출입할 경우	10	
4-4	① 배정된 방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	10	
	② 방 내 위치 임의 변경	1	

	외박		
4-5	① 무단외박	2	
	② 점호 불참	1	
4-6	대리점호를 요청하거나 도와준 행위	3	
4-7	지정된 출입문 이외의 장소로 출입	-	
4-8	24:00 이후에 다른 사생 방 출입	1	
4-9	귀사 지연(24:00 ~ 01:00)	1	
4-10	귀사 지연(01:00 ~ 05:00)	2	
	생활관 출입 절차를 어기는 행위		
4-11	① 카드키 찍지 않고 뒤따라 출입하는 행위	3	
	② 들어오는 문으로 나가는 행위	3	
	③ 24:00 ~ 05:00 밖으로 나가기	3	
	④ 지정된 출입문 이외의 장소로 출입	5	
5	※ 전열기 및 위험물(전기용품 및 가스렌지)		
5-1	전열기,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및 사용 - 허용물품 : 헤어 드라이기, 컴퓨터 - 금지물품 : 허용물품 이외의 물품(전열기, 수족관, 가습기 등 생활관에서 허용/금지하는 물품)	3	
5-2	방안에서 취사하는 행위	3	
6	※ 지시사항 불이행		
6-1	지시사항 불이행(음식물 반입절차 위반, 마스터키 3회 이상 사용, 사진 미 제출자, 애완동물 반입 등 생활관에서 지정)	1	
	인터넷 정보문화		
6-2	① 윈도우 보안패치를 하지 않아 신종바이러스에 감염 및 유포 행위	2	
	② 불법프로그램 사용, 전송, 유포 행위	5	
	③ IP불법 사용자 및 동조행위	2	
	④ 학교에서 제공하는 최신 바이러스 백신 미 설치행위	1	
	⑤ 음란물 열람, 전송, 유포 행위	10	
6-3	타인의 명의도용(사칙위반 시 본인확인 중 타인 인적사항 답변)	5	
7	※ 기타		
7-1	가중벌점(2개 항목 이상 동시 벌점대상의 경우 중대 항목에 대하여서만 벌점부과하며 가중벌점 1점 추가)	1	
7-2	동일항목 3회 이상 위반 행위	1	